

베트남의 최근 원유 관련 협정체결 형태변화

□ Production Sharing Contract 형태가 널리 쓰여

- 베트남 정부에 의해 허가된 최초의 원유계약은 남부지역에서 Pecten, Mobil, Marathon에 의해 석유개발활동과 관련해 체결된 계약이 최초의 형태임.
- 1975년의 자유화이후에는 Vietnam Oil and Gas Dep.가 설립되었고, 1977년에는 석유관련 개발사업 및 생산을 총괄하는 Petrovietnam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 PetroVietnam과 외국기업간의 원유계약 체결시에는 대부분이 production-sharing system의 장점을 이용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PSC는 외국인투자법 및 원유법 상에서 규정한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의 한 특수한 형태
- 이 PSC방식의 장점은 허가(conecssion)방식에 비해 PetorVietnam이 계약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등 회계상의 탄력성을 들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프로젝트 기간동안에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제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개방적인 제도가 가능. 베트남의 PSC는 정부정책에 좀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제적인 규정도 충족.

□ JOC 형태도 새로이 등장

- 또한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합작계약서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협정(joint operationg agreement)을 개발. JOC계약은 전통적인 PSC형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8년 이래 적용되어 계약당사자 모두가 협력관계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함.

- 그리고 협력기업의 대표는 베트남 법인격을 지닌 joint operation committee가 수행하나 이는 계약당사자들을 대표해 단순히 대리인 기능을 수행.

- 한편 2000년 9월이래 석유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해서 마련된 원유계약의 주요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원유계약의 주요 조건

○ 계약기간:

원유의 경우 5년의 탐사기간을 포함한 25년이내
 가스의 경우 7년의 탐사기간을 포함한 30년 이내

○ 계약 구역: 2광구 이하(특별한 경우 4개 광구)

○ 로얄티는 생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음

원유(일산 기준)	보통계약 (%)	인센티브 계약 (%)
2만 배럴 이하	6	4
2만 - 5만	8	6
5만 - 7.5만	10	8
7.5만 - 10만	15	10
10만 - 15만	20	15
15만 이상	25	20
천연가스(백만 입방피트)		
5이하	0	0
5 - 10	5	3
10 이상	10	6

○ 기업이익세 : 통상 50%,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경우 32%

○ 송금세 : 3-7%

- 부가세 : 0-10%
- 수출세 : 원유는 4%, 가스에는 비적용

□ Downstream 판매 및 유통시 방식

- 하층부 업무의 경우에 JVC(Joint Venture Company)나 EFOC(Entirely Foreign Owned Company)가 통상 가장 적절한 방식이며 여기에서 석유류의 수입 및 유통에 관한 제한을 받게 됨.
- JVC는 외국인투자법의 제 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베트남인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당사자간에 성립될 수 있으며, 유한책임하의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투자금액에 관한 지정은 없으며 현 투자형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 합병, 통합(consolidation) 등을 통할
- 그러나 JVC상에 있어서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사 및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FOC는 법상으로 1개 이상의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유한책임의 독립법인이다. 이는 JVC와 유사한 형태이나 베트남 측의 참여가 없으므로 합작계약도 존재하지 않음. EFOC를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회사는 신청서와 정관을 투자허가발급청(Investment License Issuing Authority)에 제출해야 함. EFOC는 원활유 제각, 유통, 아스팔트 생산·판매, LPG 주입 및 유통과 같은 하부유통 부문에 주로 적용.

□ 외국 계약자(Contractors)와 하청계약자(Sub-Contractors)

- 상층부 및 하층부 투자자들은 계약, 시추, 수송에 있어 계약자나 하청계약자와 거래할 수 있으나 동 계약자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원천과세의 대상이 됨.

-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의해 베트남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영업만을 할 수있고 다른 사업계약의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추가로 득해야 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

- 사무소형태가 시장조사, 프로젝트 개발, 본사와 베트남 매매선간의 거래 촉진 등을 위해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사무소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으며 따라서 과세도 해당이 없으나 근무자들은 국내 개인소득세의 적용을 받게됨.

선임연구원 김종호(3779-6674)
E-mail: jhokim@koreaexim.go.kr